

Do-ing교육센터규정

<제정 2021.07.01.>

<폐지 2022.02.25.>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동명대학교의 Do-ing교육 확산을 위하여 설치한 Do-ing교육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.)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조직) ① 본 센터에는 Do-ing교육 확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원과 직원, 연구원 등을 둘 수 있다.

② 센터장은 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.

제3조(업무)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Do-ing교육 계획수립 및 운영
2. Do-ing교육 콘텐츠 개발 및 운영
3. Do-ing인재 발굴 및 관리
4. Do-ing교육연구회 운영
5. Do-ing교육 전공교과 기획 및 운영
6. Do-ing교육 비교과 기획 및 운영
7. 그 밖의 Do-ing교육에 관한 사항

제4조(운영위원회) ①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으며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센터 운영 계획 수립
 2. Do-ing교육의 확산
 3. 그 밖의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
- ② 위원회는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위원회의 위원은 센터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-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.
- ⑥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과반수 위원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센터 소속 교원 또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.
- ⑧ 위원회에 참석하는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⑨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5조(운영세칙)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6조(준용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동명대학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2월 25일부터 폐지한다.